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 세금납부 설명회 및 기자회견-

2006. 4. 10.



진행 순서

** 사회 : 전재중 변호사 (기윤실 집행위원장)

- 14:00-14:10 인사말 : 김동호 목사/ 기윤실 공동대표,
높은뜻중의교회
- 14:10-14:20 사례발표 : 정성규 목사/ 부천 예인교회
- 14:20-15:00 주제발제 : 최호윤 회계사/ 기윤실 집행위원

1. 세금이란 무엇인가?
2.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정보
3. 관련법령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신청서
5.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준수 등록번호 신청서

- 15:00-15:10 기윤실 활동계획 설명 : 이진오 사무처장
- 15:10-15:30 질의응답

세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1. 들어가는 말

최근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논쟁이 여러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없이 정서적인 반감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는 논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서로 논쟁의 평행선을 유지하는 현상은 국민들에게 깨끗하지 못한 기독교라는 오해를 각인시키는 기폭제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움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논점은 세금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2. 세금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돈’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금(조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에 의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보는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조세는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가의 생산적 지출을 통한 개인의 이차적인 생산력을 증대시켜준다는 국가생산설(國家生產說),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한 국가착취설(國家搾取說), 사회변동속에서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국가진화설(國家進化說)과 같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또한 조세부과의 근거로 공공수요를 부담하는 공공수요설(公共需要設), 개인의 존재에 선행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설(義務說),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공공재편의대가로 본 이익설(利益說),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네 있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험자이며 국민을 국가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는 보험설(保險說) 등이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조세생성의 역사적인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고대시대 희랍의 조세제도는 자발적인 납부, 간접적인 과세, 납세대리인에 의한 징수로 특징지워지며 로마시대에는 재정수입을 외국 전승지 내지 식민지로부터 조달하였으며 로마인은 비상시에 한해 부과되는 인두세를 부담하였으나 Augustus 이후에는 정부가 재산세, 토지수득세(土地收得稅) 및 인두세(Capitatio)를 부과하였다.

중세봉건시대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들이 경작하고 이에 대한 지대를 왕에게 납부하였었고, 교역의 발달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후 지대를 대신하기 위한 세금으로 변천한 것이 근대조세국가형성의 본질이 되었다.

근대법치주의의 시발점인 Magna Carta는 의회의 승인 없는 국왕의 과세권을 제한하여 재정민주주의(財政民主主義, 租稅法律主義)가 썩트기 시작하였고,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이 된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왕을 두지 않고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대의기관이 정하는 법률, 왕(또는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법률이 명령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대법치국가의 3대원칙은 현대국가생성의 기초가 되었다.

동양에서 주나라의 토지제도는 정전제로 공동노동으로 경작하는 공전(公田)을 정하여 그 수확물을 국왕에게 지대의 형태로 납부하였으며, 진한시대에 들어와서는 토지사유제(私有制)를 허용하면서 봉건적 전조(田



租)를 징수하였다.

고대 우리나라의 조세제는 공동체적 집단소유기초위에 토지국유제의 영향을 받으며 일정 토지면적을 부여 받은 농민은 전조(田租)를 국가에 납부하고 부역노동에 수시로 응해야 하였다. 삼국시대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층과의 공납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를 형성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는 문무관료에게 경작할 농지를 나누어 주고 관료는 당대의 전조(田租)징수권을 가졌고, 농민에게는 정전(丁田)을 주어 매년 전조(田租)를 징수토록한 토지지배중심의 봉건제도였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이후 일제시대를 겪으며 대륙법체계를 수용한 일본의 체제를 가져와서 현재의 조세체제의 골격을 이루었으며 우리만의 조세체제 정립은 진통을 겪으며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조세에 관한 동서양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조세부과라는 국가행위(통치수단) 이전에 이러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형성에 맞추어 발전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지배층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법치국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구성원이 부담할 세금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와 정치가 동일시되므로 현금과 세금의 구분이 필요치 않았던 신정국가(神政國家)의 개념을 현재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세금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의 존재기반이 되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복음사역 이전에 구성원으로서의 분담(分擔)이다.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비용분담 성격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되며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이우사랑의 소극적인 실천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법치국가의 일반목표(국민의 행복)과 세수의 확보라는 목적사이의 괴리감은 별개의 논점으로 다루어야 학 사학이다

3. 성직자의 속성

‘성직(聖職)’의 단어적인 의미는 성스러운 직책이며 하나님나라 확장과 관련된 용이라 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목회사역자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성직자라고 할 수 있다.

천지창조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땅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주시 달라트를 활용하여 익하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 성스러운 직업(聖職)과 성스럽지 않은 속된 직업(非聖職)을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복리작업이다.

4 익의 대가설 여부

우리는 일을 하고 그 결과인 직·간접적인 산출물로 생활에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그것이 직접 먹을 수 있는 곡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일 수도 있다. 무형의 간접적인 산출물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로 정상화된 시장

우리가 획득하는 일의 댓가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부여되는 산출물이므로 명칭에 따라서 그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의의 성직자가 수령하는 금전의 속성은 명칭(사례비, 성역비, 사역비 등)과는 상관없이 일의 댓가 또는 무상으로 수령하는 수증금 중 한가지에 속한다.

무상수증금이라면 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받는자의 특성에 따라 부여되어야하나, 현재는 성직자의 능력, 경험 및 일의 특성에 따른 차등지급이 현실이므로 일의 댓가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5. 이중파세 및 조세부담

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현금한 교회재정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이중파세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중파세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귀속자에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인들의 소득은 근로, 사업, 배당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소득이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소득은 목회사역에 대한 것이므로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이다. 또한 교인들이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세와 목회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소득세의 귀속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파세가 아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같이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직접세)도 있지만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하는 세금(간접세)도 있다. 간접세의 경우 우리의 주의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직접세의 경우 세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댓가성으로 수령하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교회)가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6. 세법규정의 준수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독교국가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이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기준이지만 이를 공동체의 부담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근거로 비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세금에 관한 논란들은 교회가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들을 무시하고 초월법적인 지위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교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서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증여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성도들이 현금한 금액을 성도 개인 소득세 계산시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것도 소득세법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혜택을 누리려면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따라야만 의미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형교회 성직자들은 소득세 면세점 이하를 수령하므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가 공동체를 무시하는 탈세기관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7. 나가는 말

세금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반문해본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가하는 관점에서의 논의라면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또한, 공동체 비용분담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가 하는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논의가 당연히 이행되어야할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

A. 총회소속: 총회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나 절차상 어려움이 존재

B. 개교회단위 등록

1. 기본개념

1-1. 법인등록번호

법률행위의 주체로는 자연인인 개인과 법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한 법인 두종류가 있으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소가 부여하는 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등록번호와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구청 또는 시청에서 부여받는 등록번호가 있으나 이는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서만 효과가 있으며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고유번호증이란?

국세청은 세적관리를 위하여 일반 영리기업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체계가 동일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기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있으므로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나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분류하여 세법상으로만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요건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서는 세무서에서 세적을 관리하는 기준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중 한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고 세금 신고만을 위하여서라면 개인사업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교회명의로 출연된 재산이 있는 경우를 의미

2-3: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

a.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관 또는 규약을 의미하며, 단체 대표자를 선임

b. 사단·재단 기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개인과 독립된 단체가 재산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재산을 단체명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 c.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비영리법인의 본질은 단체의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준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서 (별첨 국세기본법 양식)
- 법인설립 신고서 및 고유번호 신청서 (별첨 법인세법 양식)
- 정관 또는 규약: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재산이 개인과 구분되는 교회의 소유라는 점과 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취임승낙서
- 임대차 계약서(또는 교회명의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관할세무서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윤실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유번호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되며, 세무서 담당자가 실지조사를 나올 수도 있으며 일주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5. 소득세 신고절차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등록합니다.
- 급여 지급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자(교회)는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지급내역 합계금액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참고) 교회내의 인원이 적은 경우(10명 이하) 매월 신고절차를 반기납부절차로 변경신청하면 매월 신고 납부가 아니라 1월과 7월 두 번만 하면 됩니다.
- 당해연도 지급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 정산액을 그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시 본인에게 정산 지급(또는 회수)하며 연말정산 결과를 그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그 다음해 3월말까지 당해연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정산
- 그 다음해 4월말까지 당해연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

6.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 명세 및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관련세무규정(2006년 4월 5일 현재)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단체의 명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4. 고유사업
 - 5. 재산상황
 -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5.5.31>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범의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의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①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 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단체의 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또는 거소			⑧(전화번호)
사 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별지제73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자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만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인성격 (해당란에 ○표)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가 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법인 기타	지점 (국내사업장)	연락 사무소	기타	여부	본점사업자 등록번호
조합법인 해당여부					공익법인			외국 외투 법인	국적 투자비율
여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부				
여부	여부			여부					

3. 사업장현황

사업의 종류						사업(수익사업) 개시일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년월일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m ²	m ²					
임대차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특별소비세		주류면허	부가기초세 과세사업			인·허가사업 여부
제조	판매	장소	유형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부
				여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4.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 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중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만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input type="checkbox"/>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 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본점 등에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9.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